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허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840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9.

발의자 : 허은아 · 강대식 · 김예지

박성민 · 박성중 · 배준영

윤두현 · 이만희 · 장동혁

최영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 및 형량 완화를 통해 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 이를 통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고, 형벌 형량간 균형을 조화시키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先 행정처분, 後 형사처벌 도입

1)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

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의3 신설).

- 2)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의4 신설).
- 3)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의3 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17조제2항제4호).

나.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량 완화

- 1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(안 제17조제1항 제5호 삭제).
- 2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17조제2항제5호 신설).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시정명령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15조의4(이행강제금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

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최초의

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

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

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

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

받은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제

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

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1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

지 아니한 자

5.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

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

이)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5조의3(시정명령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15조의4(이행강제금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</u></p>

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재판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
	<u>정수한다.</u>
	<u>(8)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17조(벌칙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7조(벌칙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5.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</u>	<u><삭 제></u>
5의2. (생 략)	5의2. (현행과 같음)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4.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협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</u>	<u>4. 제1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u>

<신 설>

5.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